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험검정의 구비서류)”를 “(시험검정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를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 ~ ⑤ (생략) <u><신설></u>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8조(시험검정의 구비서류)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u>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u> 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검정의 신청) ----- ----- ----- <u>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976